

**참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

구분	종류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30조~제38조
	■ 시·군·구 평생학습관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1조의3 (해당조례)
타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 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해당조례)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가,다,아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해당조례)
	■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99조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도로교통법」 제104조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해당조례)
	학점 은행제 기관	■ 평생교육시설 ■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 시간제 등록제(학력보완교육)를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등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 「고등교육법」 제36조

※ 그 밖에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사용기관 등록 가능

□ 1군 평생교육기관 유형

구분	기관 유형	설립 근거	기관 소개	예시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비고	
제 1 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19조	•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 수행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	•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화회관, 학생회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연수원·수련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박물관, 사회복지관, 연구원 등	지정여부 확인	시·도교육청 지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	행복학습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	
제 2 유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기관	-	설치·지정여부 확인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설치·지정	
제 3 유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음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 · 지정 기관 ('11년 지정 시작)	-	시·도교육청 지정	
제 4 유형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법 제15조	• 지역내 평생학습 주체간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을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구축'하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된 학습도시	시·군·구 평생교육 전담부서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	지정여부 확인	-	
	국가 및 지자체 평생학습추진기구	평생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함.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	-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2조	• 시·도 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여부 확인	각 시·도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14조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둔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여부 확인	각 시·군·구 설치	
제 5 유형	학교의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 학교)	평생교육법 제29조	<b>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b>	•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	-
			<b>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b>	•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과정과 체계적 학사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선정된 대학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정 대학 (사업운영 지정기간에 한함)	지정여부 확인	교육부 지정

구분	기관 유형	설립 근거	기관 소개		예시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비고
제 6 유형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시범학교)	·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주된 교육대상으로, 초·중등학교에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함.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지정여부 확인	시·도교육청 지정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산업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보고사항 확인	교육부에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학력 인정	· 정규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등록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지정
			학력 미인정	· 일정기준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에 등록가능	-		지역교육청 등록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차원의 기관		삼성중공업공과대학, 삼성전자공과대학교,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사내대학, LH 토지주택대학교, KDB 금융대학교 등의 사내대학	인가여부 확인	교육부 인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1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원격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사이버학원 및 사이버 교육원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원격교육으로 전문대·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 필요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등	인가여부 확인	교육부 인가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4조	·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병원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시민,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 일간신문·통신·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부설 평생교육기관		신문사·방송사 문화센터(아카데미)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기관		기업체연수원(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 등),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 2군 평생교육기관 유형

구분	기관 유형	설립 근거	기관 소개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비고
제 7유형	평생직업교육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기관의 설립·운영등록증 등으로 기관소재 지역교육청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 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등록 / 학교교과교습 학원제외
제 8유형 (기관형)	주민자치기관	지방자치법령	·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시설로서, 교육· 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함. · 시·군·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해당 법령에 근거한 기관 설치 확인 및 운영조례 등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
	문화시설기관	도서관법	·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국립박물관(미술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대학박물관(미술관)이 해당됨.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등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
		지방문화원 진흥법	· 지방문화원 등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수행내용 중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을 포함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문화의 집 등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 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또는 문화예 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 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시·군·구에 신고
	여성 관련 시설	양성평등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 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시·군·구 설치 또는 시·도 지정
	청소년 관련 시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	· 노인교실 등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 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 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회)관		시·군·구에 신고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국가 및 지자체 설치 또는 시·군·구에 신고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 여성가족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정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전문 인력을 두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가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설치·지정
사회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구분	기관 유형	설립 근거	기관 소개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비고
제 9유형 (훈련 및 연수형)	직업훈련기관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li> </ul>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여부를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협의·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li> </ul>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여부를 확인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연수기관	공무원교육 훈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연수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감사교육원, 자치인력개발원, 국제공무원교육원, 중앙소방학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통계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철도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전자정부지원센터 정보화교육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능력발전과, 병무청 교육담당관실,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 기상청 기상교육과,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 국회사무처 연수국, 비상기획위원회 비상관리국 등)</li> </ul>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설립된 공무원연수기관 여부를 확인	-
	각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교육법이 아닌 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체, 금융투자업 등의 일반 연수기관(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 등)</li> </ul>	평생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근거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 확인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기관	
제 10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위주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li> <li>평생교육실천협의회,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li> </ul>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각 시·도에 등록
	비영리 사(재)단법인	사(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재)단법인</li> <li>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li> </ul>	법인설립허가서 및 정관 등의 내용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기본법/ 사(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li> <li>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li> </ul>		-
	여성 관련 단체	여성발전기본법/ 사(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li> <li>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li> </ul>		-
	노인 관련 단체	노인복지법/ 사(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li> <li>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li> </ul>		-
	시민단체	사(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시민성함양단체</li> <li>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li> </ul>		-
	기 타	사(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평생교육법 상이 아닌 타 법령상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li> </ul>		-